

관 세 법

문 1. 관세법령상 관세와 내국세등의 부과·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체납처분의 대상이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이 아닌 재산인 경우에는 관세의 우선순위는 「국세기본법」에 따른 국세와 동일하게 한다.
- ②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·징수하는 부가가치세의 부과·징수·환급 등에 관하여 「국세기본법」, 「국세징수법」, 「부가가치세법」의 규정과 「관세법」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「관세법」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.
- ③ 수입물품에 대한 세관장의 관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계류 중인 경우 그 징수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세무서장이 그 체납세액을 징수한다.
- ④ 세관장은 체납자의 내국세등을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하는 경우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자의 내국세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해당 세무서장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.

문 2. 관세법령상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?

- ㄱ. 납세의무자가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액 결정방법에 관한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고 그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통보된 과세가액 결정방법에 따라 해당 사전심사 신청 이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
- ㄴ. 납세의무자가 해당 관세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납세의무자가 관세조사의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
- ㄷ.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관세를 납부한 결과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당해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

- ① ㄱ, ㄴ ② ㄱ, ㄷ
- ③ ㄴ, ㄷ ④ ㄱ, ㄴ, ㄷ

문 3. 관세법령상 입항전 수입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입항전 수입신고가 수리되고 보세구역 등으로부터 반출되지 아니한 물품이 재해로 멸실되거나 변질 또는 손상되어 그 가치가 떨어졌을 때에는 해당 물품이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.
- ② 입항전수입신고는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그 물품을 적재한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항하여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 전(항공기의 경우 1일 전)부터 할 수 있다.
- ③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은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된 후에 수입신고하여야 한다.
- ④ 출항부터 입항까지의 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등 당해 선박 등이 출항한 후에 신고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출항하기 전에 신고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고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.

문 4. 관세법령상 원산지증명서 등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세관장은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「관세법」, 조약, 협정 등에 따른 관세율을 적용할 때 일반특혜관세·국제협력관세 또는 편익관세를 배제하는 등 관세의 편익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② 「관세법」, 조약, 협정 등에 따라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개인에게 무상으로 송부된 탁송품·별송품 또는 여행자의 휴대품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③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세관이나 그 밖에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에 제출된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 확인 자료의 진위 여부,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세관장의 확인요청은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하여야 한다.
- ④ 원산지 사전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 관세청장은 60일 이내에 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사전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문 5. 관세법령상 관세의 부과와 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세관장은 자율심사업체에게 수출입업무의 처리방법 및 체계 등에 관한 관세청장이 정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
- ② 세관장은 관세의 과오납금을 확인한 경우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급결정을 하고 그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.
- ③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는 경우 그 감면액과 법적 근거는 물품(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)을 수입하기 위하여 납세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수입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다.
- ④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납세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.

문 6. 관세법령상 납세의무 또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법령, 조약, 협약 등에 따라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는 납세의무자가 납세신고한 관세액 전부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지만,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보증액의 범위에서 납세의무를 진다.
- ② 수입신고를 한 물품의 경우 수입을 위탁받아 대행수입한 수입업체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가 불분명하면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.
- ③ 관세를 체납한 납세의무자에게 그 관세의 납세신고일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의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하여야 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만 「국세징수법」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그 관세를 징수할 수 있다.
- ④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관세는 분할되는 법인이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,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및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.

문 7. 관세법령상 보세운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승인을 받아 보세운송하는 외국물품이 부득이한 사유로 망실되어 지정된 기간 내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.
- ② 화물이 국내에 도착된 후 최초로 보세구역에 반입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물품을 보세운송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③ 보세운송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끝내야 하지만, 세관장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- ④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보세운송절차를 생략한다.

문 8. 관세법령상 종합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종합보세구역에서는 보세창고·보세공장·보세전시장·보세건설장 또는 보세판매장의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.
- ② 관세청장은 당해 종합보세구역예정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지정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.
- ③ 외국인 관광객, 국내에 주재하는 외교관이 종합보세구역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구입할 때 납부한 관세 및 내국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.
- ④ 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관세청장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종합보세구역의 지정대상이 된다.

문 9. 「관세법」상 ㉠, ㉡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?

수입하려는 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운송수단, 관세통로, 하역통로 또는 「관세법」에 따른 장치 장소로부터 즉시반출 신고를 하고 반출을 하는 자는 즉시반출신고를 한 날부터 (㉠)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. 세관장은 즉시 반출을 한 자가 기간 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·징수한다. 이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(㉡)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.

- | | |
|-------|----------------|
| ㉠ | ㉡ |
| ① 10일 | 관세의 100분의 20 |
| ② 10일 | 납부세액의 100분의 20 |
| ③ 15일 | 관세의 100분의 20 |
| ④ 15일 | 납부세액의 100분의 20 |

문 10. 관세법령상 우편물(서신 제외) 통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수출·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우편물은 통관우체국을 경유하여야 하며, 통관우체국은 체신관서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다.
- ② 통관우체국의 장은 세관장이 우편물에 대하여 수출·수입 또는 반송을 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우편물을 발송하거나 수취인에게 내줄 수 없다.
- ③ 우편물이 가공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무상으로 수출입하는 물품 및 그 물품의 원·부자재인 경우 해당 우편물의 수취인이나 발송인은 수출·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.
- ④ 세관장은 우편물 통관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을, 관세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통관우체국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문 11. 관세법령상 국제협력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무역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정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다.
- ② 정부는 국제협력관세 협상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세를 양허할 수 있다. 다만, 특정 국가와 협상할 때에는 기본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를 초과하여 관세를 양허할 수 없다.
- ③ 국제협력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, 세율 및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④ 국제협력관세 협상에서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시장접근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시장접근물량 이내로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는 당해 추천서를 수입신고수리 후 5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문 12. 관세법령상 납부세액의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세관장은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해당 보정기간에 보정신청을 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.
- ②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그 세액이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경정한 후에는 다시 경정하지 못한다.
- ③ 납세의무자는 최초의 신고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등이 그에 관한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어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.
- ④ 납세의무자로부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문 13. 「관세법」상 불복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내국세등의 부과, 징수, 감면, 환급 등에 관한 세관장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이의신청·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.
- ②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(「국세기본법」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)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하게 청구된 것으로 본다.
- ③ 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이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그 심사청구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보내야 한다.
- ④ 관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적합하지 아니하지만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.

문 14. 관세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본품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, 세관공무원은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검사상 필요하면 그 물품의 일부를 건본품으로 채취할 수 있다.
- ② 이의신청인,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신청 또는 청구의 대상이 3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배우자,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.
- ③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에는 그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.
- ④ 세관장은 관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에 통관표지를 첨부할 것을 명할 수 있다.

문 15. 「관세법」상 관세범의 처벌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관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납세신고를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② 보세구역 반입명령에 대하여 반입대상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③ 밀수출입죄에 전용(專用)되는 선박·자동차나 그 밖의 운반 기구는 그 소유자가 범죄에 사용된다는 정황을 알고 있고, 범죄물품을 적재하거나 적재하려고 한 경우에는 몰수한다.
- ④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사항을 위반한 운영인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문 16. 관세법령상 기간과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기한이 체신관서의 휴무,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관세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.
- ② 세관장이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규정에 따라 관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세관장은 납부기한연장을 취소하고 즉시 납부하도록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.
- ③ 가격신고, 납세신고, 수출입신고, 반송신고, 보세화물반출입신고, 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적하목록을 제출한 자는 신고필증을 포함하여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를 신고 또는 제출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.
- ④ 세관장은 재해로 인하여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관세의 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문 17. 「관세법」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세관공무원은 관세법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 권리현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나누어주어야 한다.
- ② 세관공무원은 특정한 분야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납부세액과 「관세법」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 관련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통합하여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③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요구한 정보와 관련되어 있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그 밖의 정보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.
- ④ 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세관공무원은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없다.

문 18. 관세법령상 물품의 하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내국물품은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외국무역선에 적재할 수 있으나, 외국물품은 세관장의 허가과 무관하게 내항선에는 적재할 수 없다.
- ② 외국무역기에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지만, 관세청장이 감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세관장에 대한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.
- ③ 외국무역선이 개항의 바깥에서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는 경우에는 선장은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, 그 허가를 받으려면 선장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- ④ 외국무역기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이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일 때에는 보세구역 외의 장소로부터 외국 무역기에 적재하는 경우에만 그 물품을 그대로 적재할 수 있다.

문 19. 관세법령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적하목록에 관한 자료의 보관기간은 당해 신고에 대한 수리일로부터 3년이다.
- ② 보세운송업자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,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. 다만,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안전관리 기준의 준수 정도 측정·평가 결과가 우수한 자가 등록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정할 수 있다.
- ③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심사에 관한 권한을 세관장 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- ④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을 출항하려면 선장이나 기장은 출항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출항신고를 하여야 한다.

문 20. 관세법령상 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정상가격은 당해 물품의 공급국에서 소비되는 동종물품의 통상거래가격을 말하지만, 동종물품이 거래되지 아니하여 통상거래가격을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물품의 국가에서 제3국으로 수출되는 수출가격 중 대표적인 가격으로서 비교 가능한 가격 또는 원산지국에서의 제조원가에 합리적인 수준의 관리비 및 판매비와 이윤을 합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본다.
- ②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위하여 조사를 통해 확인되어야 하는 실질적 피해등은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와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를 말한다.
-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때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, 국내 시장구조, 물가안정, 통상협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다.
- ④ 당해 물품의 원산지국으로부터 직접 수입되지 아니하고 동종 물품의 생산실적이 없는 제3국을 거쳐 수입되는 경우에는 그 제3국의 통상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본다.